# 열공급규정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2026.01.01.) | 제·개정(안) (2026.04.01.) | 개정이유 |
|---|---|---|
| **제2조(적용지역 등)** ①이 규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법 제9조 제3항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제2조(적용지역 등)** ①이 규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법 제9조 제3항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른 주무 행정기관 변경사항 반영 |
| **제3조(규정의 신고 등)** ①이 규정은 법 제17조 제1항·제2항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습니다.<br>②이 규정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br>③사업자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합니다.<br>④사용자는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제3조(규정의 신고 등)** ①이 규정은 법 제17조 제1항·제2항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습니다.<br>②이 규정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br>③사업자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합니다.<br>④사용자는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른 주무 행정기관 변경사항 반영 |
| **제4조(규정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제4조(규정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른 주무 |

| 현 행 (2026.01.01.) | 제·개정(안) (2026.04.01.) | 개정이유 |
|---|---|---|
| 경우에는 이 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 경우에는 이 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 행정기관 변경사항 반영 |
|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br>9. "공고지역"과 "공급구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br>가. 공고지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지역<br>15. "계약면적"이라 함은 온수의 주택용 공사비분담금과 주택용 기본요금의 부과단위를, "계약용량"이라 함은 열교환기용량으로써 온수의 업무용·공공용 기본요금 부과단위를, "연결열부하"라 함은 온수의 업무용·공공용 공사비분담금의 부과단위를 각각 말합니다. |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br>9. "공고지역"과 "공급구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br>가. 공고지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지역<br>15. "계약면적"이라 함은 온수의 주택용 공사비분담금과 주택용 기본요금의 부과단위를, "계약용량"이라 함은 열교환기용량**(열교환기가 없는 경우 냉방재생부하를 적용합니다.)**으로써 온수의 업무용·공공용 기본요금 부과단위를, "연결열부하"라 함은 온수의 업무용·공공용 공사비분담금의 부과단위를 각각 말합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른 주무 행정기관 변경사항 반영 및 계약용량 정의 명확화 |
| **제7조(공급의무)**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br>1. 법령에 따라 열공급이 제한되는 경우<br>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br>3.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용량(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한 공급용량을 포함합니다)을 초과하여 열 | **제7조(공급의무)**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br>1. 법령에 따라 열공급이 제한되는 경우<br>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br>3.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용량(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한 공급용량을 포함합니다)을 초과하여 열 |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른 주무 행정기관 변경사항 반영 |

| 현 행 (2026.01.01.) | 제·개정(안) (2026.04.01.) | 개정이유 |
| --- | --- | --- |
|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br>4.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의 상황에 따라 열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br>5. 열사용시설이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시설기준(이하 "열사용시설기준"이라 합니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br>6. 공급을 승낙하면 이미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br>7. 이 규정 이외의 조건으로 열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br>4.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의 상황에 따라 열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br>5. 열사용시설이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시설기준(이하 "열사용시설기준"이라 합니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br>6. 공급을 승낙하면 이미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br>7. 이 규정 이외의 조건으로 열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 |
| **제45조(요금의 계산)** ①요금은 하나의 열수급계약에 열매체별로 1개월마다 계산합니다.<br>②제1항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계산합니다.<br>1. 기본요금 :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대하여 요금표(별표3)의 해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온수를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온수냉방용에 대한 기본요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br>가. 계약면적 = (각 세대의 전용면적의 합계) +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 + (관리사무소, 노인정, 보육시설, 주민체육시설, 경비실, 그 밖의 부대복리시설에 열공급(난방 또는 급탕)이 되는 건물의 건축허가면적의 합계) 단, 계약 면적 산정 기 | **제45조(요금의 계산)** ①요금은 하나의 열수급계약에 열매체별로 1개월마다 계산합니다.<br>②제1항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계산합니다.<br>1. 기본요금 :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대하여 요금표(별표3)의 해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온수를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온수냉방용에 대한 기본요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br>가. 계약면적 = (각 세대의 전용면적의 합계) +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 + (관리사무소, 노인정, 보육시설, 주민체육시설, 경비실, 그 밖의 부대복리시설에 열공급(난방 또는 급탕)이 되는 건물의 건축허가면적의 합계) 단, 계약 면적 산정 기 | 계약용량 정의 명확화 |

| 현 행 (2026.01.01.) | 제·개정(안) (2026.04.01.) | 개정이유 |
|---|---|---|
| 준은 규정 제 35조 제2항 제1호 가, 나목을 준용합니다.<br>나. 계약용량 = 열교환기용량 | 준은 규정 제 35조 제2항 제1호 가, 나목을 준용합니다.<br>나. 계약용량 = 열교환기용량**(열교환기가 없는 경우 냉방재생부하 적용)** | |
| **제48조(요금정산)**<br>⑥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br>연평균 단위당총괄원가(원/Gcal) = 연평균 연료비원단위(원/Gcal) + 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br>1.연평균 연료비원단위(원/Gcal)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연간 열판매량<br>2.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 :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이하 "요금상한고시"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별로 산정된 상한원단위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한 원단위<br>3.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제47조 제3항과 같이 계산합니다.<br>4.연간 열판매량 : 제3항 제8호의 열판매량<br>⑦동조의 요금정산에 따른 정산조정은 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정산조정률을 해당연도 7월1일부터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산조정의 적용시기 및 적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48조(요금정산)**<br>⑥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br>연평균 단위당총괄원가(원/Gcal) = 연평균 연료비원단위(원/Gcal) + 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br>1.연평균 연료비원단위(원/Gcal)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연간 열판매량<br>2.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 :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이하 "요금상한고시"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별로 산정된 상한원단위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한 원단위<br>3.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제47조 제3항과 같이 계산합니다.<br>4.연간 열판매량 : 제3항 제8호의 열판매량<br>⑦동조의 요금정산에 따른 정산조정은 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정산조정률을 해당연도 7월1일부터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산조정의 적용시기 및 적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른 주무 행정기관 변경사항 반영 |
| **제50조(요금 조정절차)** 사업자는 제 | **제50조(요금 조정절차)** 사업자는 제 | 정부조직법 |

| 현 행 (2026.01.01.) | 제·개정(안) (2026.04.01.) | 개정이유 |
|---|---|---|
| 47조 및 제48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47조에 대해서는 제1호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br>1. 요금산정내역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br>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열공급규정 개정신고<br>3. 사용자에 대한 열요금 조정 사전통보 | 47조 및 제48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47조에 대해서는 제1호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br>1. 요금산정내역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br>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열공급규정 개정신고<br>3. 사용자에 대한 열요금 조정 사전통보 | 개정('25.10.1.)에 따른 주무 행정기관 변경사항 반영 |
| **제52조(그 밖의 요금조정)**<br>②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열공급규정을 수리한 날로부터, 제5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 **제52조(그 밖의 요금조정)**<br>②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열공급규정을 수리한 날로부터, 제5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른 주무 행정기관 변경사항 반영 |
| **제62조(기본요금의 정산)**<br>⑩기본요금중 계약용량은 사용자기계실 준공후 열교환기용량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62조(기본요금의 정산)**<br>⑩기본요금중 계약용량은 사용자기계실 준공후 열교환기용량**(열교환기가 없는 경우 냉방재생부하 적용)**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

| 현 행 (2026.01.01.) | 제·개정(안) (2026.04.06.) | 개정이유 |
|---|---|---|
| 별표 / 별지 | 별표 / 별지 | |
| (별지 제1-1호서식) 열사용신청서(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 (별지 제1-1호서식) 열사용신청서(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른 주무 행정기관 변경사항 반영 |
| (별지 제1-2호서식) 열사용신청서(기존공동주택용) | (별지 제1-2호서식) 열사용신청서(기존공동주택용) | |
| (별지 제1-3호서식) 열사용신청서(신축건물용) | (별지 제1-3호서식) 열사용신청서(신축건물용) | |
| (별지 제1-4호서식) 열사용신청서(기존건물용) | (별지 제1-4호서식) 열사용신청서(기존건물용) | |
| (별지 제1-5호서식) 열사용신청서(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신탁계약시) | (별지 제1-5호서식) 열사용신청서(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신탁계약시) | |
| (별지 제1-6호서식) 열사용신청서(신축건물용, 신탁계약시) | (별지 제1-6호서식) 열사용신청서(신축건물용, 신탁계약시) | |
| (별지 제2-1호서식) 증설사용(변경사용,재사용) 사용신청서(공동 및 단독주택용) | (별지 제2-1호서식) 증설사용(변경사용,재사용) 사용신청서(공동 및 단독주택용) | |
| (별지 제2-2호서식) 증설사용(변경사용,재사용) 사용신청서(건물용) | (별지 제2-2호서식) 증설사용(변경사용,재사용) 사용신청서(건물용) | |
| (별지 제3-1호서식)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공동 및 단독주택용) | (별지 제3-1호서식)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공동 및 단독주택용) | |
| (별지 제3-2호서식)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건물용) | (별지 제3-2호서식)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건물용) | |
| (별지 제3-3호서식)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공동 및 단독주택용, 열공급개시 이전) | (별지 제3-3호서식)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공동 및 단독주택용, 열공급개시 이전) | |
| (별지 제3-4호서식)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건물용, 열공급개시 이전) | (별지 제3-4호서식)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건물용, 열공급개시 이전) | |
| (별지 제5-1호서식) 열수급 계약서(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 (별지 제5-1호서식) 열수급 계약서(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 |
| (별지 제5-1호서식) 열수급 계약서(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 (별지 제5-1호서식) 열수급 계약서(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 |
| (별지 제5-2호서식) 열수급 계약서(기존공동주택용, 명의변경용) | (별지 제5-2호서식) 열수급 계약서(기존공동주택용, 명의변경용) | |
| (별지 제5-3호서식) 열수급 계약서(신축건물용) | (별지 제5-3호서식) 열수급 계약서(신축건물용) | |
| (별지 제5-4호서식) 열수급 계약서(기존건물용, 명의변경용) | 별지 제5-4호서식) 열수급 계약서(기존건물용, 명의변경용)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08.28.>

(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table>
<tr><td colspan="9">열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 colspan="2">※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공동주택명</td><td colspan="2"></td><td>공동주택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사업주체</td><td>주 소</td><td colspan="9"></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업시공자</td><td>주 소</td><td colspan="9"></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건축물<br>현 황</td><td>공동</td><td>전용면적</td><td colspan="3">㎡</td><td>세대발코니 확장면적</td><td colspan="3">㎡</td></tr>
<tr><td>주택</td><td>세대수(호)</td><td></td><td>기계실수</td><td></td><td>동수</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부대·<br>복리<br>시설</td><td>시설명</td><td>관리사무소</td><td>경로당</td><td colspan="2">주민편익시설</td><td colspan="3">그 밖의 시설</td></tr>
<tr><td>건축허가연면적</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열공급면적</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열공급개시요청일</td><td></td><td>※열공급개시<br>예정일</td><td></td><td colspan="2">※분배관<br>설치공사 예정일</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주체) (인)
신청자(사업시공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발코니,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6. 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 팸플릿 포함)
7.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접수일은 일체의 설계도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8. 그 밖에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주2) 열공급규정 제42조에 의거 공사비분담금은 열공급개시일 이후에는 정산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 사용자가 최종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업자가 검토하여 승인 통보한 열공급이 되는 면적으로 정산 완료
2. 발코니면적 :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60일이전에 사용자가 제출한 열이 공급되는 발코니 합산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근거로 정산 완료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04.01.>

(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table>
<tr><td colspan="9">열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 colspan="2">※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공동주택명</td><td colspan="2"></td><td>공동주택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사업주체</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업시공자</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건축물<br>현 황</td><td>공동</td><td>전용면적</td><td colspan="3">㎡</td><td>세대발코니 확장면적</td><td colspan="3">㎡</td></tr>
<tr><td>주택</td><td>세대수(호)</td><td colspan="2"></td><td>기계실수</td><td></td><td>동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부대·<br>복리<br>시설</td><td>시설명</td><td colspan="2">관리사무소</td><td>경로당</td><td colspan="2">주민편익시설</td><td colspan="2">그 밖의 시설</td></tr>
<tr><td>건축허가연면적</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열공급면적</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열공급개시요청일</td><td></td><td colspan="2">※열공급개시<br>예정일</td><td></td><td colspan="2">※분배관<br>설치공사 예정일</td><td></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주체) (인)
신청자(사업시공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발코니,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6. 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 팸플릿 포함)
7.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접수일은 일체의 설계도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8. 그 밖에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주2) 열공급규정 제42조에 의거 공사비분담금은 열공급개시일 이후에는 정산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 사용자가 최종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업자가 검토하여 승인 통보한 열공급이 되는 면적으로 정산 완료
4. 발코니면적 :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60일이전에 사용자가 제출한 열이 공급되는 발코니 합산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근거로 정산 완료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08.28.>

(기존공동주택용)

<table>
<tr><td colspan="9">열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 colspan="2">※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공동주택명</td><td colspan="3"></td><td>공동주택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 rowspan="2">입주자대표회의</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td><td colspan="2">고유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주택관리업자)</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건축물<br>현 황</td><td>공동<br>주택</td><td colspan="2">전용면적</td><td colspan="2">㎡</td><td>세대발코니 확장면적</td><td colspan="2">㎡</td></tr>
<tr><td>세대수(호)</td><td colspan="2"></td><td>기계실수</td><td colspan="2"></td><td>동수</td><td></td></tr>
<tr><td rowspan="3">부대·<br>복리<br>시설</td><td>시설명</td><td>관리사무소</td><td>경로당</td><td>주민편익시설</td><td colspan="2">그 밖의<br>시설</td></tr>
<tr><td>허가연면적</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열공급면적</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열공급개시요청일</td><td colspan="3"></td><td colspan="2">※열공급개시예정일</td><td colspan="2"></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인)
신청자 (주택관리업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서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부대·복리시설 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증서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제출시)
5. 열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서, 입주자동의서
6.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접수일은 일체의 설계도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7. 그 밖에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04.01.>

(기존공동주택용)

<table>
<tr><td colspan="9">열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 colspan="2">※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공동주택명</td><td colspan="3"></td><td>공동주택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 rowspan="2">입주자대표회의</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td><td colspan="2">고유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주택관리업자)</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건축물<br>현 황</td><td>공동<br>주택</td><td colspan="2">전용면적</td><td colspan="2">㎡</td><td>세대발코니 확장면적</td><td colspan="2">㎡</td></tr>
<tr><td>세대수(호)</td><td colspan="2"></td><td>기계실수</td><td colspan="2"></td><td>동수</td><td></td></tr>
<tr><td rowspan="3">부대·<br>복리<br>시설</td><td>시설명</td><td>관리사무소</td><td>경로당</td><td>주민편익시설</td><td colspan="2">그 밖의<br>시설</td></tr>
<tr><td>허가연면적</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열공급면적</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열공급개시요청일</td><td colspan="3"></td><td colspan="2">※열공급개시예정일</td><td colspan="2"></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인)
신청자 (주택관리업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서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부대·복리시설 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증서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제출시)
5. 열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서, 입주자동의서
6.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접수일은 일체의 설계도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7. 그 밖에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08.28.>

(신축건물용)

<table>
<tr><td colspan="8">열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 colspan="2">※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td></tr>
<tr><td colspan="2">건물명</td><td colspan="2"></td><td>건물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건축주</td><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2">시공자</td><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건축물현황</td><td>건축허가연면적</td><td colspan="2">㎡</td><td>열부하</td><td colspan="3">Mcal/h</td></tr>
<tr><td>열사용용도</td><td colspan="2">☐ 난방, 급탕<br>☐ 냉방</td><td>동수/기계실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열공급개시요청일</td><td colspan="2"></td><td colspan="2">※열공급개시예정일</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건축주 (인)
신청자 시공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법인등기부등본 등 건축주와 시공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제출시)
4.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접수일은 일체의 설계도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5. 그 밖에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04.01.>

(신축건물용)

<table>
<tr><td colspan="8">열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 colspan="2">※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td></tr>
<tr><td colspan="2">건물명</td><td colspan="2"></td><td>건물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건축주</td><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시공자</td><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건축물현황</td><td>건축허가연면적</td><td colspan="2">㎡</td><td>열부하</td><td colspan="3">Mcal/h</td></tr>
<tr><td>열사용용도</td><td colspan="2">☐ 난방, 급탕<br>☐ 냉방</td><td>동수/기계실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열공급개시요청일</td><td colspan="2"></td><td colspan="2">※열공급개시예정일</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건축주 (인)
신청자 시공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법인등기부등본 등 건축주와 시공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제출시)
4.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접수일은 일체의 설계도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5. 그 밖에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08.28.>

(기존건물용)

<table>
<tr><td colspan="9">열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 colspan="2">※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건물명</td><td colspan="2"></td><td>건물소재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소유자</td><td>주 소</td><td colspan="9"></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용자<br>(관리인)</td><td>주 소</td><td colspan="9"></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건축물현황</td><td colspan="2">건축허가연면적</td><td colspan="2">㎡</td><td>열부하</td><td colspan="3">Mcal/h</td></tr>
<tr><td colspan="2">열사용용도</td><td colspan="2">☐ 난방, 급탕<br>☐ 냉방</td><td>동수/기계실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열공급개시요청일</td><td colspan="3"></td><td colspan="2">※열공급개시예정일</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유자 (인)
신청자 사용자(관리인)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법인등기부등본 등 건축주와 시공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제출시)
4.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접수일은 일체의 설계도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5. 그 밖에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04.01.>

(기존건물용)

<table>
<tr><td colspan="9">열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 colspan="2">※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건물명</td><td colspan="2"></td><td>건물소재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소유자</td><td>주 소</td><td colspan="9"></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용자<br>(관리인)</td><td>주 소</td><td colspan="9"></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건축물현황</td><td colspan="2">건축허가연면적</td><td>㎡</td><td colspan="2">열부하</td><td colspan="3">Mcal/h</td></tr>
<tr><td colspan="2">열사용용도</td><td>☐ 난방, 급탕<br>☐ 냉방</td><td colspan="2">동수/기계실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열공급개시요청일</td><td colspan="3"></td><td colspan="2">※열공급개시예정일</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유자 (인)
신청자 사용자(관리인)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법인등기부등본 등 건축주와 시공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4.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접수일은 일체의 설계도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5. 그 밖에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08.28.>

(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신탁계약시)

<table>
<tr><td colspan="9">열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 colspan="2">※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공동주택명</td><td colspan="2"></td><td>공동주택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사업주체<br>(위탁자)</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2">사업주체<br>(수탁자)</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2">사업시공자</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5">건축물<br>현 황</td><td rowspan="2">공동<br>주택</td><td>전용면적</td><td colspan="2">㎡</td><td>세대발코니 확장면적</td><td colspan="3">㎡</td></tr>
<tr><td>세대수(호)</td><td></td><td>기계실수</td><td></td><td>동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부대·<br>복리<br>시설</td><td>시설명</td><td>관리사무소</td><td>경로당</td><td colspan="2">주민편익시설</td><td colspan="2">그 밖의 시설</td></tr>
<tr><td>건축허가연면적</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열공급면적</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열공급개시요청일</td><td></td><td>※열공급개시<br>예정일</td><td></td><td colspan="2">※분배관<br>설치공사 예정일</td><td colspan="2"></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사업주체(위탁자) (인)
신청자 사업주체(수탁자) (인)
신청자 시공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발코니,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6. 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 팸플릿 포함)
7.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접수일은 일체의 설계도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8. 그 밖에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주2) 열공급규정 제42조에 의거 공사비분담금은 열공급개시일 이후에는 정산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 사용자가 최종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업자가 검토하여 승인 통보한 열공급이 되는 면적으로 정산 완료
2. 발코니면적 :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60일이전에 사용자가 제출한 열이 공급되는 발코니 합산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근거로 정산 완료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04.01.>

(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신탁계약시)

<table>
<tr><td colspan="9">열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 colspan="2">※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공동주택명</td><td colspan="2"></td><td>공동주택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사업주체<br>(위탁자)</td><td>주 소</td><td colspan="9"></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업주체<br>(수탁자)</td><td>주 소</td><td colspan="9"></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업시공자</td><td>주 소</td><td colspan="9"></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건축물<br>현 황</td><td>공동<br>주택</td><td>전용면적</td><td colspan="2">㎡</td><td colspan="2">세대발코니 확장면적</td><td colspan="3">㎡</td></tr>
<tr><td>세대수(호)</td><td></td><td>기계실수</td><td></td><td>동수</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부대·<br>복리<br>시설</td><td>시설명</td><td>관리사무소</td><td>경로당</td><td colspan="2">주민편익시설</td><td colspan="3">그 밖의 시설</td></tr>
<tr><td>건축허가연면적</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열공급면적</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열공급개시요청일</td><td></td><td>※열공급개시<br>예정일</td><td></td><td colspan="2">※분배관<br>설치공사 예정일</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사업주체(위탁자) (인)
신청자 사업주체(수탁자) (인)
신청자 시공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발코니,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6. 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 팸플릿 포함)
7.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접수일은 일체의 설계도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8. 그 밖에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주2) 열공급규정 제42조에 의거 공사비분담금은 열공급개시일 이후에는 정산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 사용자가 최종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업자가 검토하여 승인 통보한 열공급이 되는 면적으로 정산 완료
2. 발코니면적 :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60일이전에 사용자가 제출한 열이 공급되는 발코니 합산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근거로 정산 완료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08.28.>

(신축건물용, 신탁계약시)

<table>
<tr><td colspan="7">열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 colspan="2">※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td></tr>
<tr><td colspan="2">건물명</td><td colspan="2"></td><td>건물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건축주<br>(위탁자)</td><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2">건축주<br>(수탁자)</td><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2">시공자</td><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건축물현황</td><td>건축허가연면적</td><td colspan="2">㎡</td><td>열부하</td><td colspan="2">Mcal/h</td></tr>
<tr><td>열사용용도</td><td colspan="2">☐ 난방, 급탕<br>☐ 냉방</td><td>동수/기계실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열공급개시요청일</td><td colspan="2"></td><td colspan="2">※열공급개시예정일</td><td colspan="2"></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건축주(위탁자) (인)
신청자 건축주(수탁자) (인)
신청자 시공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법인등기부등본 등 건축주와 시공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제출시)
4.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접수일은 일체의 설계도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5. 그 밖에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04.01.>>

(신축건물용, 신탁계약시)

<table>
<tr><td colspan="7">열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td></tr>
<tr><td colspan="2">건물명</td><td></td><td>건물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건축주<br>(위탁자)</td><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성 명</td><td></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건축주<br>(수탁자)</td><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성 명</td><td></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시공자</td><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성 명</td><td></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건축물현황</td><td>건축허가연면적</td><td>㎡</td><td>열부하</td><td colspan="3">Mcal/h</td></tr>
<tr><td>열사용용도</td><td>□ 난방, 급탕<br>□ 냉방</td><td>동수/기계실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열공급개시요청일</td><td colspan="2"></td><td>※열공급개시예정일</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건축주(위탁자) (인)
신청자 건축주(수탁자) (인)
신청자 시공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법인등기부등본 등 건축주와 시공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제출시)
4.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 열사용시설기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접수일은 일체의 설계도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5. 그 밖에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08.28.>

(공동 및 단독주택용)

<table>
<tr><td colspan="8">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사용자번호</td><td colspan="2"></td><td>※공급열매체</td><td colspan="2"></td><td>※계약종별</td><td colspan="2"></td><td>※접수일</td><td></td></tr>
<tr><td>공동주택명</td><td colspan="3"></td><td>공동주택소재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입주자대표회의</td><td>주 소</td><td colspan="9"></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고유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택관리업자)</td><td>주 소</td><td colspan="9"></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3">공동주택</td><td colspan="3">부대·복리시설</td><td colspan="3"></td></tr>
<tr><td>신청 전</td><td colspan="2">신청 후</td><td colspan="2">신청 전</td><td colspan="3">신청 후</td></tr>
<tr><td>계약종별</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계약면적</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사유</td><td colspan="10"></td></tr>
<tr><td>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요청일</td><td colspan="3"></td><td colspan="3">※증설공급(변경공급,재공급)예정일</td><td colspan="4"></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인)
신청자 (주택관리업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발코니,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증서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5.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서, 입주자동의서
6.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7. 그 밖에 사업자가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04.01.>

(공동 및 단독주택용)

<table>
<tr><td colspan="8">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공동주택명</td><td colspan="3"></td><td>공동주택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입주자대표회의</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td><td colspan="2">고유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택관리업자)</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3">공동주택</td><td colspan="5">부대·복리시설</td></tr>
<tr><td colspan="2">신청 전</td><td>신청 후</td><td colspan="2">신청 전</td><td colspan="3">신청 후</td></tr>
<tr><td>계약종별</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계약면적</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증설사용(변경사용,<br>재사용)신청사유</td><td colspan="8"></td></tr>
<tr><td>증설사용(변경사용,<br>재사용)요청일</td><td colspan="3"></td><td colspan="2">※증설공급(변경공급,재<br>공급)예정일</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인)
신청자 (주택관리업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발코니,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증서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5.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서, 입주자동의서
6.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7. 그 밖에 사업자가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08.28.>

(건물용)

<table>
<tr><td colspan="8">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건물명</td><td colspan="3"></td><td>건물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소유자</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용자<br>(관리인)</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구 분</td><td colspan="4">신 청 전</td><td colspan="5">신 청 후</td></tr>
<tr><td>계약종별</td><td colspan="4"></td><td colspan="5"></td></tr>
<tr><td>계약용량</td><td colspan="4">Mcal/h</td><td colspan="5">Mcal/h</td></tr>
<tr><td>증설사용(변경사용,<br>재사용)신청사유</td><td colspan="8"></td></tr>
<tr><td>증설사용(변경사용,<br>재사용)요청일</td><td colspan="3"></td><td colspan="3">※증설공급(변경공급,재공급)<br>예정일</td><td colspan="2"></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유자 (인)
신청자 사용자(관리인)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유자와 사용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4.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동의서
5.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6. 그 밖에사업자가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04.01.>

(건물용)

<table>
<tr><td colspan="8">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사용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건물명</td><td colspan="2"></td><td>건물소재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소유자</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용자<br>(관리인)</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구 분</td><td colspan="3">신 청 전</td><td colspan="5">신 청 후</td></tr>
<tr><td>계약종별</td><td colspan="3"></td><td colspan="5"></td></tr>
<tr><td>계약용량</td><td colspan="3">Mcal/h</td><td colspan="5">Mcal/h</td></tr>
<tr><td>증설사용(변경사용,<br>재사용)신청사유</td><td colspan="8"></td></tr>
<tr><td>증설사용(변경사용,<br>재사용)요청일</td><td colspan="3"></td><td>※증설공급(변경공급,재공급)<br>예정일</td><td colspan="4"></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유자 (인)
신청자 사용자(관리인)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유자와 사용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4.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동의서
5.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6. 그 밖에사업자가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04.26.>

(공동 및 단독주택용)

<table>
<tr><td colspan="9">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 colspan="2">※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공동주택명</td><td colspan="3"></td><td>공동주택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새로운 사용자</td><td rowspan="2">입주자<br>대표회의</td><td>주소</td><td colspan="8"></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고유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택관리<br>업자</td><td>주소</td><td colspan="8"></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종전 사용자</td><td rowspan="2">입주자<br>대표회의</td><td>주소</td><td colspan="8"></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고유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택관리<br>업자</td><td>주소</td><td colspan="8"></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명의변경사유</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2">명의변경신청일</td><td colspan="3"></td><td colspan="2">※명의변경일</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사용자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명의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새로운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신청자 종 전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 서명확인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제출 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입주자동의서
3. 명의변경과 관련된 관리업무인계관련서류, 관리주체계약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명의변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6.04.01.>

(공동 및 단독주택용)

<table>
<tr><td colspan="9">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 colspan="2">※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공동주택명</td><td colspan="3"></td><td>공동주택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새로운 사용자</td><td rowspan="2">입주자<br>대표회의</td><td>주소</td><td colspan="8"></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고유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택관리<br>업자</td><td>주소</td><td colspan="8"></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종전 사용자</td><td rowspan="2">입주자<br>대표회의</td><td>주소</td><td colspan="8"></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고유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택관리<br>업자</td><td>주소</td><td colspan="8"></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명의변경사유</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2">명의변경신청일</td><td colspan="3"></td><td colspan="2">※명의변경일</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사용자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명의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새로운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신청자 종 전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 서명확인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제출 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입주자동의서
3. 명의변경과 관련된 관리업무인계관련서류, 관리주체계약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명의변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3.04.26.>

(건물용)

<table>
<tr><td colspan="9">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건물명</td><td colspan="3"></td><td>건물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6">새로운<br>사용자</td><td rowspan="2">소유자</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용자<br>(관리인)</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종전<br>사용자</td><td rowspan="2">소유자</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용자<br>(관리인)</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명의변경사유</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2">명의변경신청일</td><td colspan="2"></td><td>※명의변경일</td><td colspan="4"></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사용자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명의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새로운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신청자 종 전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 서명확인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제출 시)
2. 관리단구성현황 및 관리인 선임결의서(또는 관리인 선임계약서)
3. 명의변경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명의변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6.04.01.>

(건물용)

<table>
<tr><td colspan="8">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건물명</td><td colspan="3"></td><td>건물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6">새로운<br>사용자</td><td rowspan="2">소유자</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용자<br>(관리인)</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종전<br>사용자</td><td rowspan="2">소유자</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용자<br>(관리인)</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명의변경사유</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명의변경신청일</td><td colspan="2"></td><td>※명의변경일</td><td colspan="4"></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사용자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명의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새로운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신청자 종 전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 서명확인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제출 시)
2. 관리단구성현황 및 관리인 선임결의서(또는 관리인 선임계약서)
3. 명의변경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명의변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3-3호서식)** <신설 2023.04.26.>

(공동 및 단독주택용, 열공급개시 이전)

<table>
<tr><td colspan="8">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 colspan="2">※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td></tr>
<tr><td colspan="2">공동주택명</td><td colspan="3"></td><td>공동주택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6">새로운 사용자</td><td rowspan="3">건축주</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3">시공사</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6">종전 사용자</td><td rowspan="3">건축주</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3">시공사</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명의변경사유</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명의변경신청일</td><td colspan="3"></td><td>※명의변경일</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사용자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명의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새로운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신청자 종 전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 서명확인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제출 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입주자동의서
3. 명의변경과 관련된 관리업무인계관련서류, 관리주체계약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명의변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6.04.01.>

(공동 및 단독주택용, 열공급개시 이전)

<table>
<tr><td colspan="8">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 colspan="2">※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td></tr>
<tr><td colspan="2">공동주택명</td><td colspan="3"></td><td>공동주택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6">새로운 사용자</td><td rowspan="3">건축주</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2">시공사</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6">종전 사용자</td><td rowspan="3">건축주</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2">시공사</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2">명의변경사유</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2">명의변경신청일</td><td colspan="2"></td><td colspan="2">※명의변경일</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사용자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명의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새로운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신청자 종 전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 서명확인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제출 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입주자동의서
3. 명의변경과 관련된 관리업무인계관련서류, 관리주체계약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명의변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2023.04.26.>

(건물용, 열공급개시 이전)

<table>
<tr><td colspan="8">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td></tr>
<tr><td>건물명</td><td colspan="2"></td><td>건물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6">새로운 사용자</td><td rowspan="3">소유자</td><td>주소</td><td colspan="6"></td></tr>
<tr><td>성명</td><td></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용자<br>(관리인)</td><td>주소</td><td colspan="6"></td></tr>
<tr><td>성명</td><td></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종전 사용자</td><td rowspan="3">소유자</td><td>주소</td><td colspan="6"></td></tr>
<tr><td>성명</td><td></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용자<br>(관리인)</td><td>주소</td><td colspan="6"></td></tr>
<tr><td>성명</td><td></td><td>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명의변경사유</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명의변경신청일</td><td colspan="2"></td><td>※명의변경일</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사용자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명의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새로운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신청자 종 전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 서명확인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제출 시)
2. 관리단구성현황 및 관리인 선임결의서(또는 관리인 선임계약서)
3. 명의변경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명의변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6.04.01.>

(건물용, 열공급개시 이전)

<table>
<tr><td colspan="9">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td><td>처리기간<br>14일</td></tr>
<tr><td>※사용자번호</td><td></td><td>※공급열매체</td><td></td><td>※계약종별</td><td></td><td>※접수일</td><td colspan="2"></td></tr>
<tr><td>건물명</td><td colspan="3"></td><td>건물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6">새로운<br>사용자</td><td rowspan="2">소유자</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용자<br>(관리인)</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종전<br>사용자</td><td rowspan="2">소유자</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용자<br>(관리인)</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성명</td><td></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명의변경사유</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3">명의변경신청일</td><td></td><td colspan="2">※명의변경일</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사용자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명의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새로운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신청자 종 전 소유자 (인)
사용자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 서명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 시)
2. 관리단구성현황 및 관리인 선임결의서(또는 관리인 선임계약서)
3. 명의변경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명의변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

※ 란은 사업자가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5.08.28.>

(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앞면)

**열수급 계약서**

제 호

| | | | | | |
|---|---|---|---|---|---|
| 사용자 | 공동주택명 | | | | |
| | 공동주택소재지 | | | | |
| | 사업주체 | 주 소 | | | |
| |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사업시공자 | 주 소 | | | |
| | | 성 명 | | | |
| 사업자 | 주 소 | | | | |
| | 성 명 | | | 전화번호 | |
| 사용자번호 | | | 계약종별 | | |
| 공급열매체 | □온수 | | 열사용용도 | □난방·급탕용, □냉방용 | |
| 기계실수 | | | 열공급개시예정일 | | |
| 계약면적 | | | 계약기간 | | |
| 검침일 | | | 요금납부일 | | |
| 재산한계점 | | |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 | |

**주 요 계 약 내 용**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3. 사용자는 사업주체에 변동이 있거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거나, 그 밖에 사용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5.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경우,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치 이후 동 시설은 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
6.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분담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7.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공급규정 제44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뒷면)

| | |
|---|---|
| 주 요 계 약 내 용 | 8.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br>9.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br>10.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분담금, 그 밖의 이 열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br>11. 사용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사업자 소유의 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br>12.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건설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br>13.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과 함께 이전됩니다.<br>14. 사용자는 ①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②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③열공급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중지·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④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⑤행정기관의 지시·인허가 문제·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⑥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br>15. 열수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공고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사업자와의 협의(공고지역 외 지역, 열공급규정 제14조 제5항 제5호)없이 타 열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br>16. 사업자는 열공급규정 제64조에 의거 보증금 예치사유가 있는 사용자에게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또는 거부 할 경우 규정 제23조에 의거 열공급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br>17.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열공급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거 1년 기한으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

**사용자 본인은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에 동의하며, 주요 계약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사용자 : (사업주체) (인)
사용자 : (사업시공자) (인)
사업자 :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인)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6.04.01.>

(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앞면)

**열수급 계약서**

제 호

| | | | | | |
|---|---|---|---|---|---|
| 사용자 | 공동주택명 | | | | |
| | 공동주택소재지 | | | | |
| | 사업주체 | 주 소 | | | |
| |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사업시공자 | 주 소 | | | |
| | | 성 명 | | | |
| 사업자 | 주 소 | | | | |
| | 성 명 | | | 전화번호 | |
| 사용자번호 | | | 계약종별 | | |
| 공급열매체 | □온수 | | 열사용용도 | □난방·급탕용, □냉방용 | |
| 기계실수 | | | 열공급개시예정일 | | |
| 계약면적 | | | 계약기간 | | |
| 검침일 | | | 요금납부일 | | |
| 재산한계점 | | |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 | |
| 주 요 계 약 내 용 |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br>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br>3. 사용자는 사업주체에 변동이 있거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거나, 그 밖에 사용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br>4.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br>5.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경우,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치 이후 동 시설은 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br>6.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분담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br>7.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공급규정 제44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 | | | |

(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뒷면)

| | |
|---|---|
| 주 요 계 약 내 용 | 8.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br>9.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br>10.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분담금, 그 밖의 이 열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br>11. 사용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사업자 소유의 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br>12.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건설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br>13.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과 함께 이전됩니다.<br>14. 사용자는 ①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②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③열공급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중지·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④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⑤행정기관의 지시·인허가 문제·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⑥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br>15. 열수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공고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사업자와의 협의(공고지역 외 지역, 열공급규정 제14조 제5항 제5호)없이 타 열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br>16. 사업자는 열공급규정 제64조에 의거 보증금 예치사유가 있는 사용자에게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또는 거부 할 경우 규정 제23조에 의거 열공급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br>17.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열공급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거 1년 기한으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

**사용자 본인은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에 동의하며, 주요 계약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사용자 : (사업주체) (인)
사용자 : (사업시공자) (인)
사업자 :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인)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5.08.28.>

(기존공동주택용, 명의변경용) (앞면)

<table>
<tr><td colspan="8">열수급 계약서<br>제 호</td></tr>
<tr><td rowspan="6">사용자</td><td colspan="2">공동주택명</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공동주택소재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입주자대표회의</td><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성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택관리업자)</td><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성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업자</td><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사용자번호</td><td colspan="3"></td><td>계약종별</td><td colspan="3"></td></tr>
<tr><td>공급열매체</td><td colspan="3">□온수</td><td>열사용용도</td><td colspan="3">□난방·급탕용, □냉방용</td></tr>
<tr><td>기계실수</td><td colspan="3"></td><td>열공급개시예정일</td><td colspan="3"></td></tr>
<tr><td>계약면적</td><td colspan="3"></td><td>계약기간</td><td colspan="3"></td></tr>
<tr><td>검침일</td><td colspan="3"></td><td>요금납부일</td><td colspan="3"></td></tr>
<tr><td>재산한계점</td><td colspan="7"></td></tr>
<tr><td>주 요<br>계 약<br>내 용</td><td colspan="7">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br>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br>3. 사용자는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br>4.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br>5.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분담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br>6.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br>7.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td></tr>
</table>

(기존공동주택용, 명의변경용) (뒷면)

| | |
|---|---|
| 주 요<br>계 약<br>내 용 | 8.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공급규정 제44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br>9.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분담금, 그 밖의 이 열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br>10. 사용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사업자 소유의 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br>11.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건설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br>12.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과 함께 이전됩니다.<br>13. 사용자는 ①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②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③열공급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중지·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④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⑤행정기관의 지시·인허가 문제·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⑥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br>14. 열수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공고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사업자와의 협의(공고지역 외 지역, 열공급규정 제14조 제5항 제5호)없이 타 열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br>15. 사업자는 열공급규정 제64조에 의거 보증금 예치사유가 있는 사용자에게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또는 거부 할 경우 규정 제23조에 의거 열공급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br>16.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열공급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거 1년 기한으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

**사용자 본인은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에 동의하며, 주요 계약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사용자 : 입주자대표회의 (인)

사용자 : (주택관리업자) (인)

사업자 :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인)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6.04.01.>

(기존공동주택용, 명의변경용) (앞면)

**열수급 계약서**

제 호

| | | | | | |
|---|---|---|---|---|---|
| 사용자 | 공동주택명 | | | | |
| | 공동주택소재지 | | | | |
| | 입주자대표회의 | 주소 | | | |
| | | 성명 | | 전화번호 | |
| | (주택관리업자) | 주소 | | | |
| | | 성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 | 주 소 | | | | |
| | 성 명 | | | 전화번호 | |
| 사용자번호 | | | 계약종별 | | |
| 공급열매체 | □온수 | | 열사용용도 | □난방·급탕용, □냉방용 | |
| 기계실수 | | | 열공급개시예정일 | | |
| 계약면적 | | | 계약기간 | | |
| 검침일 | | | 요금납부일 | | |
| 재산한계점 | | | | | |
| 주 요 계 약 내 용 |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br>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br>3. 사용자는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br>4.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br>5.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분담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br>6.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br>7.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 | | | |

(기존공동주택용, 명의변경용) (뒷면)

| | |
|---|---|
| 주 요<br>계 약<br>내 용 | 8.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공급규정 제44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br>9.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분담금, 그 밖의 이 열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br>10. 사용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사업자 소유의 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br>11.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건설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br>12.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과 함께 이전됩니다.<br>13. 사용자는 ①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②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③열공급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중지·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④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⑤행정기관의 지시·인허가 문제·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⑥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br>14. 열수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공고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사업자와의 협의(공고지역 외 지역, 열공급규정 제14조 제5항 제5호)없이 타 열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br>15. 사업자는 열공급규정 제64조에 의거 보증금 예치사유가 있는 사용자에게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또는 거부 할 경우 규정 제23조에 의거 열공급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br>16.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열공급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거 1년 기한으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

**사용자 본인은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에 동의하며, 주요 계약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사용자 : 입주자대표회의 (인)

사용자 : (주택관리업자) (인)

사업자 :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인)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5.08.28.>

(신축건물용) (앞면)

**열수급 계약서**

제 호

| | | | | | |
|---|---|---|---|---|---|
| 사용자 | 건물명 | | | | |
| | 건물소재지 | | | | |
| | 건축주 | 주소 | | | |
| | | 성명 | | 전화번호 | |
| | 시공자 | 주소 | | | |
| | | 성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 | 주 소 | | | | |
| | 성 명 | | | 전화번호 | |
| 사용자번호 | | | 계약종별 | | |
| 공급열매체 | □온수 | | 열사용용도 | □난방·급탕용, □냉방용 | |
| 기계실수 | | | 열공급개시예정일 | | |
| 계약기간 | | | 검침일 | | |
| 요금납부일 | | | 재산한계점 | | |
| 계약용량 (Mcal/hr) | | | 연결열부하 (Mcal/hr) | (하계: ) | |

주 요 계 약 내 용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3. 사용자는 관리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사용자의 사정으로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경우,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치 이후 동 시설은 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
5.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6.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분담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7. 사용자는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공급규정 제44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8.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축건물용) (뒷면)

| | |
|---|---|
| 주 요<br>계 약<br>내 용 | 9.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br>10.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분담금, 그 밖에 이 열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br>11. 사용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사업자 소유의 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br>12.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건설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br>13.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과 함께 이전됩니다.<br>14. 사용자는 ①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②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③열공급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중지·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④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⑤행정기관의 지시·인허가 문제·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⑥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br>15. 열수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공고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사업자와의 협의(공고지역 외 지역, 열공급규정 제14조제5항제5호)없이 타 열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br>16. 사업자는 열공급규정 제64조에 의거 보증금 예치사유가 있는 사용자에게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또는 거부 할 경우 규정 제23조에 의거 열공급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br>17.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열공급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거 1년 기한으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

**사용자 본인은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에 동의하며, 주요 계약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사용자 : 건축주 (인)

사용자 : 시공자 (인)

사업자 :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인)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6.04.01.>

(신축건물용) (앞면)

**열수급 계약서**

제 호

| | | | | | |
|---|---|---|---|---|---|
| 사용자 | 건물명 | | | | |
| | 건물소재지 | | | | |
| | 건축주 | 주소 | | | |
| | | 성명 | | 전화번호 | |
| | 시공자 | 주소 | | | |
| | | 성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 | 주 소 | | | | |
| | 성 명 | | | 전화번호 | |
| 사용자번호 | | | 계약종별 | | |
| 공급열매체 | □온수 | | 열사용용도 | □난방·급탕용, □냉방용 | |
| 기계실수 | | | 열공급개시예정일 | | |
| 계약기간 | | | 검침일 | | |
| 요금납부일 | | | 재산한계점 | | |
| 계약용량 (Mcal/hr) | | | 연결열부하 (Mcal/hr) | (하계: ) | |

**주 요 계 약 내 용**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3. 사용자는 관리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사용자의 사정으로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경우,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치 이후 동 시설은 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
5.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6.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분담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7. 사용자는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공급규정 제44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8.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축건물용) (뒷면)

| | |
|---|---|
| 주 요<br>계 약<br>내 용 | 9.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br>10.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분담금, 그 밖에 이 열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br>11. 사용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사업자 소유의 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br>12.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건설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br>13.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과 함께 이전됩니다.<br>14. 사용자는 ①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②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③열공급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중지·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④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⑤행정기관의 지시·인허가 문제·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⑥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br>15. 열수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공고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사업자와의 협의(공고지역 외 지역, 열공급규정 제14조제5항제5호)없이 타 열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br>16. 사업자는 열공급규정 제64조에 의거 보증금 예치사유가 있는 사용자에게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또는 거부 할 경우 규정 제23조에 의거 열공급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br>17.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열공급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거 1년 기한으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

**사용자 본인은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에 동의하며, 주요 계약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사용자 : 건축주 (인)

사용자 : 시공자 (인)

사업자 :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인)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5.08.28.>

(기존건물용, 명의변경용) (앞면)

<table>
<tr><td colspan="8">열수급 계약서<br>제 호</td></tr>
<tr><td rowspan="6">사용자</td><td colspan="2">건물명</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건물소재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소유자</td><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성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용자<br>(관리인)</td><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성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업자</td><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사용자번호</td><td colspan="3"></td><td>계약종별</td><td colspan="3"></td></tr>
<tr><td>공급열매체</td><td colspan="3">□온수</td><td>열사용용도</td><td colspan="3">□난방·급탕용, □냉방용</td></tr>
<tr><td>기계실수</td><td colspan="3"></td><td>열공급개시예정일</td><td colspan="3"></td></tr>
<tr><td>계약용량<br>(연결열부하)</td><td colspan="3">(하계: )</td><td>계약기간</td><td colspan="3"></td></tr>
<tr><td>검침일</td><td colspan="3"></td><td>요금납부일</td><td colspan="3"></td></tr>
<tr><td>재산한계점</td><td colspan="7"></td></tr>
<tr><td>주 요<br>계 약<br>내 용</td><td colspan="7">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br>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br>3. 사용자는 관리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br>4.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br>5.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분담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br>6.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공급규정 제44조 제3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td></tr>
</table>

(기존건물용, 명의변경용) (뒷면)

| | |
|---|---|
| 주 요<br>계 약<br>내 용 | 7.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열공급구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br>8.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br>9.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분담금, 그 밖의 이 열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br>10. 사용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사업자 소유의 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br>11.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건설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br>12.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과 함께 이전됩니다.<br>13. 사용자는 ①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②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③열공급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중지·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④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⑤행정기관의 지시·인허가 문제·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⑥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br>14. 열수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공고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사업자와의 협의(공고지역 외 지역, 열공급규정 제14조 제5항 제5호)없이 타 열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br>15. 사업자는 열공급규정 제64조에 의거 보증금 예치사유가 있는 사용자에게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또는 거부 할 경우 규정 제23조에 의거 열공급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br>16.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열공급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거 1년 기한으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

**사용자 본인은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에 동의하며, 주요 계약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사용자 : 소유자 (인)
사용자 : 사용자(관리인) (인)
사업자 :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인)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6.04.01.>

(기존건물용, 명의변경용) (앞면)

**열수급 계약서**

제 호

| | | | | | |
|---|---|---|---|---|---|
| 사용자 | 건물명 | | | | |
| | 건물소재지 | | | | |
| | 소유자 | 주소 | | | |
| | | 성명 | | 전화번호 | |
| | 사용자 (관리인) | 주소 | | | |
| | | 성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 | 주 소 | | | | |
| | 성 명 | | | 전화번호 | |
| 사용자번호 | | | 계약종별 | | |
| 공급열매체 | □온수 | | 열사용용도 | □난방·급탕용, □냉방용 | |
| 기계실수 | | | 열공급개시예정일 | | |
| 계약용량 (연결열부하) | (하계: ) | | 계약기간 | | |
| 검침일 | | | 요금납부일 | | |
| 재산한계점 | | | | | |
| 주 요 계 약 내 용 |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br>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br>3. 사용자는 관리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br>4.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br>5.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분담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br>6.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공급규정 제44조 제3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 | | | |

(기존건물용, 명의변경용) (뒷면)

| | |
|---|---|
| 주 요<br>계 약<br>내 용 | 7.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열공급구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br>8.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br>9.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분담금, 그 밖의 이 열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br>10. 사용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사업자 소유의 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br>11.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건설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br>12.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과 함께 이전됩니다.<br>13. 사용자는 ①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②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③열공급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중지·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④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⑤행정기관의 지시·인허가 문제·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⑥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br>14. 열수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공고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사업자와의 협의(공고지역 외 지역, 열공급규정 제14조 제5항 제5호)없이 타 열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br>15. 사업자는 열공급규정 제64조에 의거 보증금 예치사유가 있는 사용자에게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또는 거부 할 경우 규정 제23조에 의거 열공급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br>16.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열공급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거 1년 기한으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

**사용자 본인은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에 동의하며, 주요 계약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사용자 : 소유자 (인)
사용자 : 사용자(관리인) (인)
사업자 :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인)